

난민신청을 한 사람의 아이이고, 「주민표」가 없는 아이도¥100,000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【예 4】난민신청을 한 사람의 아이인 경우

• 아버지 어머니가 난민신청을 하고 있고, 3개월보다 긴 재류자격이 있습니다.



•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정액기급금 (¥100,000) 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😊



• 아이(아기)가 태어났습니다.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.



• 아이(아기)는 아직 3개월보다 긴 재류자격이 없습니다.

\* 특별정액기급금 (¥100,000) 은 받을 수 없습니다. 😞



• 5월20일에 일본의 룰이 바뀌었습니다.



• 3개월보다 짧은 재류자격의 아이 ( 아기 ) 도 특별정액기급금 (¥100,000) 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• 시청에서 특별정액기급금의 신청을 합니다.

원고작성 : NPO法人 多文化共生マネージャー全国協議会 (NPOタブマネ)  
감수 : NPO法人 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(移住連)  
번역 : NPO法人 多言語センターFACIL

→특별정액기급금 (¥100,000) 을 받을 수 있습니다 ! 😊

《재류자격을 바꿀 경우》 •도쿄입국관리소 : 7월31일까지 우편으로 보냅니다.



■다른 입국관리소 : 입국관리소에 갑니다.

